

발전기금 관리규정

- 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부금 및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발전기금이라 함은 본교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, 부동산, 유가증권 또는 연구·업무용 물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한다.
- 제3조 (발전기금 관리의 원칙)**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본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부목적의 범위 안에서 선량하게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한다.
- 제4조 (발전기금의 종류)** 발전기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① 일반발전기금: 기부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발전기금
 - ② 지정발전기금: 기부자가 장학금, 건축비, 연구비 등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발전기금
- 제5조 (발전기금의 접수 및 관리)** 발전기금의 접수 및 기금관리는 경리계에서 담당하며, 기부자관리 및 이를 위한 영수증 발급은 기획처에서 담당한다.
- 제6조 (회계처리)** 모든 발전기금은 본교의 경리계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7조 (기부자에 대한 예우)**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한다.
- 제8조 (발전기금 모금사업비)** 발전기금 모금에 필요한 사업비는 대학의 재정상황과 발전기금 모금실적을 고려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에 의한다.
- ③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제정이전에 관리하고 있는 발전기금은 이 규정에 의해서 관리된 것으로 본다.